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의사상자란?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

의사자 인정 사례

故 A 씨는 B 씨와 함께 해수욕장 바다에 입수하여 해루질을 하던 중 , B 씨가 이동 중에 조류에 밀려 떠내려가자 故 A 씨가 B 씨를 구조하던 중 사망하였으며 故 A 씨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자로 인정받음 .

의사상자 인정신청 절차

신청시 구비서류

-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 상해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의사상자 지원내용

(단위: 천원)

구 분		의사자(유족)	의 상 자			
			1~2급	3~4급	5~6급	7~9급
보건복지부	보상금(1회)	221,728 * '22년 기준	부상등급에 따라 유족 보상금의 100~5% 지급			
경기도	특별위로금(1회)	30,000	1급 15,000 2급 12,500	3급 10,000 4급 7,500	5급 5,000 6급 4,000	7급 3,000 8급 2,000 9급 1,000
	수당(매월)	100	80	60	40	미지급
	명절위문금	100 명절(설, 추석) 지급				

※ 이외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국립묘지 안장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의사상자'를 검색해 주세요.

문의 **경기도청 복지사업과(031-8008-4307)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의사상자 업무담당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